사업재편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21년『사업재편펀드』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 개요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>위탁운용 금액 및 선정 운용사수</td><td>○ 총 500억원 이상
<table><tr><th>선정 운용사 수</th><th>출자금액</th><th>최소결성금액</th></tr><tr><td>1개사</td><td>250억원*</td><td>500억원</td></tr></table>* 공동출자자 : 성장사다리펀드 180억원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0억원 출자</td></tr>
<tr><td>출자대상 투자기구</td><td>○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지구
○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
※ ‘21.10.21.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(제271조의14)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신청할 경우, 본 펀드 공동출자자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의 유한책임사원 지위에 따라 향후 투자기구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(성장금융과 협의)
○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
○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
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포함
* ‘21.10.21. 개정된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(시행령 포함) 적용
※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,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</td></tr>
<tr><td>운용사 신청자격</td><td>○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설립된 법인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국내에 설립된 법인
○ 공동 운용(CO-GP)시에는 제안펀드 운용상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</td></tr>
<tr><td>운용사 선정방법</td><td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
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정
* 한국성장금융 : www.kgrowth.or.kr(출자사업공고)</td></tr>
<tr><td>접수일시</td><td>○ 2021년 11월 22일(월) (16:00 限)
* 주목적 투자대상, 출자조건 등 공고 조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 협의 또는 문의</td></tr>
<tr><td>심사결과 발 표</td><td>○ 2021년 12월 중*
* 지원 결과,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</td></tr>
<tr><td>펀 드 결성시한</td><td>○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
* Multi-closing의 경우, 결성 후 6개월 이내 가능</td></tr>
</table>

2.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

□ 법인형태의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)으로 사업재편 특성상(코스피, 코스닥)도 포함

○ 투자기간 내 아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

□ 주목적 투자대상

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

○ 아래 ①, ②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3)

① 사업재편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60% 이상 투자 주1)

② 사업재편승인기업에 최소결성금액의 30% 이상 투자 주2)

주1)『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』제2조에 정의된 **"사업재편"을 추진하는 "기업"에 대한 투자**

주2) 사업재편기업에 투자 후 **"1년 내 사업재편승인기업"** 또한 ②의 주목적 투자 인정

주3) 단일 투자건의 주목적 투자대상 중복적용 가능

< 주목적 투자 관련 용어 정의 >

① 사업재편기업 :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**1)과 2)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**

1) 합병, 분할, 주식의 이전·취득·소유, 회사의 설립 등*과 같은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**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**

* 간이합병, 소규모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주식 포괄적 교환, 간이주식교환, 소규모 주식교환, 주식 교환·이전·취득·소유, 영업양도·양수·임대, 회사설립, 영업용 자산 양도·양수

2)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**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***

* 제품, 서비스 등의 생산·판매·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,
신제품등을 개발·생산·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 매출액 비중을 늘리는 활동,
원재료, 부품,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, 제품 등의 생산비용을 줄이는 활동

※ 참고 :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(정의), 시행령 제2조(사업재편의 방식 등)

② 사업재편승인기업 : 기업의 선제적·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 및 목표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사업재편 신청 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

※ 승인기업 확인 : 기업활력법 종합포털-소통광장-공표사항(www.oneshot.or.kr)

※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대상 추가를 요청할 경우 협의 가능

3. 주요 출자조건

<table>
<tr><th>항목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최소결성
금액</td><td>○ 500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>운용사
출자
비율</td><td>○ 최소결성금액의 1%이상
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 비율 이상 출자,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
* 유한회사(LLC)의 경우 운용인력이 출자하는 경우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
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</td></tr>
<tr><td>존속기간</td><td>○ 펀드 결성일(성립일)로부터 10년 이내</td></tr>
<tr><td>투자기간</td><td>○ 펀드 결성일(성립일)로부터 5년 이내</td></tr>
<tr><td>납입방식</td><td>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</td></tr>
<tr><td>관리
보수</td><td>○ 결성일로부터 2년 이내 : 약정총액 × 기준보수율
○ 결성일로부터 2년 이후 : 투자잔액 × 기준보수율
○ 펀드 약정총액별 기준 보수율(구간별 적용)
<table>
<tr><th>결성규모</th><th>기준보수율</th></tr>
<tr><td>500억원 이하</td><td>연 2.2%이내</td></tr>
<tr><td>500억원 초과 ~ 1,000억원 이하</td><td>연 2.0%이내</td></tr>
<tr><td>1,000억원 초과</td><td>연 1.8%이내</td></tr>
</table>
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 시 상기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범위 내 협의 가능</td></tr>
<tr><td>성과
보수</td><td>○ (기본) 기준수익률(IRR 6%) 초과시 초과수익의 20% 이내 지급
○ (추가) 기준수익률(IRR 6%)를 초과할 경우,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 실적에 연동하여 추가 성과보수 지급
-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출자자 앞* 배분될 초과수익 중 10% 이내에서 지급(단, 주목적 ① 의무투자비율 준수 시 지급)
<table>
<tr><th>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비율</th><th>인센티브 지급 비율</th></tr>
<tr><td>30% 초과 ~ 40% 이하</td><td>초과수익 중 3% 이내</td></tr>
<tr><td>40% 초과 ~ 50% 이하</td><td>초과수익 중 7% 이내</td></tr>
<tr><td>50% 초과</td><td>초과수익 중 10% 이내</td></tr>
</table>
* 성장사다리펀드,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앞 배분되는 금액
※ 선정 후 출자자 및 운용사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됨</td></tr>
<tr><td>핵심
운용
인력</td><td>○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이상 참여
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</td></tr>
</table>

	○ 자격 요건 - 핵심운용인력 :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 -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*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서식 '작성요령' 참조 ○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%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겸임을 제한 ○ 핵심운용인력(대표펀드매니저 포함)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*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 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○ 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핵심운용인력 2인 이상이 참여 ○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(정관)에 기재
출자자 제한	○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법인이 원칙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사의 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○ 정책기관* 및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(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)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* 정책기관 :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
수탁 회사	○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 ○ 펀드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계 감사인	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드 전자보고 시스템	○ 펀드 전자보고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
기타	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 ○ 주목적 투자대상 의무투자 비율 달성여부는 한국성장금융,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확인 ○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(주목적투자분야(비율), 보수구조 등)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, 펀드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 ○ ESG* 출자사업과 공동 출자할 수 있음(단, 주목적 투자분야와 비율은 준수해야 함) * 환경보호(E), 사회적 책임(S), 적정한 지배구조(G)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과정에서 공동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

4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○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
※ 다만,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 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

○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투자업체 발굴 및 투사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
○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○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○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
○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○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
○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 시, 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

5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○ 결성시한(협의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
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
○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 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
○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○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□ 기 타

○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
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
○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
○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1. 9. 30(목)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
6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○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구술심사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일자	내용	비고
2021. 11. 22(월)	제안서 접수	10:00 ~ 16:00
2021. 12월 중	심사결과 발표	개별 통지

※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7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□ 지원방법

○ 출자자가 정하는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퀵서비스, 우편 등으로 비대면 제출

*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(관련 양식은 온라인 출자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
○ 제안 심사(2차 심사)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8부)를 제출

- 분량 : 20페이지 이내(제출 방법 및 양식 등은 별도 안내 예정)

○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협의(문의사항 집계 목적)

□ 출자 설명회(Online)

○ 일시 : 2021년 11월 2일(화) 홈페이지 게시 예정

* 단, 출자 설명회는 당사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
8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**접수처**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㈜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5층)

□ **문의처** :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1본부 성장투자팀 (02-2090-9160)
E-mail : ldg@kgrowth.or.kr

2021년 11월 1일

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
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

※ 공고일, 접수일 등 일정은 내·외부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